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등 변경 안내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 수리일: 2013년 9월 13일

□ 대상 펀드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 AB 유럽 인컴 증권 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

□ 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주식 추가	(추가)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종류C-P 환매 수수료 삭제	90일 미만: 이익금의70%	없음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 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C-P 환매 수수료 삭제	<u>90일 미만: 이익금의70%</u>	없음
제4 부. 집합투자기 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 구 관련 회사에 관 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u>한국채권평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211</u>	<u>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을곡로 88</u>
제5 부. 기타 투자 자보호를 위해 필요 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 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 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 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권의3분의2이상과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3분의1 이 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 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4분의1 이 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 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된 수익증권 총좌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 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제5 부. 기타 투자 자보호를 위해 필요 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 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 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 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u>(추가)</u>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 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 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u>다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 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 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니다.</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u> - <u>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u>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 <u>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4) 반대매수청구권</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u>법 제188조제2항 각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u></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u>법 제188조 제2항 각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u>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	<u>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u>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영업보고서] <u>3)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영업보고서] 3)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u>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으로</u> 표시한 경우	(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표시한 경우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2) 수시공시 1~7. (생략) <u>8~9. (추가)</u>	(2) 수시공시 1~7. (생략) <u>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u> <u>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u>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u>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주식 추가	<u>(추가)</u>	<u>*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9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7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종류C-P 환매 수수료 삭제	<u>90일 미만: 이익금의70%</u>	<u>없음</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 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C-P 환매 수수료 삭제	<u>90일 미만: 이익금의70%</u>	없음
제4 부. 집합투자기 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 구 관련 회사에 관 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u>한국채권평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211</u>	<u>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을곡로 88</u>
제5 부. 기타 투자 자보호를 위해 필요 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 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 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 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권의3분의2이상과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3분의1 이 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 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4분의1 이 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 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된 수익증권 총좌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 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제5 부. 기타 투자 자보호를 위해 필요 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 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 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 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u>(추가)</u>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 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 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u>다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 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 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니다.</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u></p> <p>- <u>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u>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 <u>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가. 수익자 총회 등, (4) 반대매수청구권</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u>법 제188조제2항 각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u></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1. <u>법 제188조 제2항 각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u>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u>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u>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영업보고서] <u>3)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p>	<p>[영업보고서] 3)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으로</u> 표시한 경우</p>	<p>(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표시한 경우</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2) 수시공시 1~7. (생략) <u>8~9. (추가)</u></p>	<p>(2) 수시공시 1~7. (생략) <u>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u> <u>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u>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u>)로서 <u>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u>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정기갱신		연간 정기갱신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9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7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간 정기갱신		연간 정기갱신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제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1. 재무정보</p> <p>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p> <p>3. 집합투자기구의 연도별 운용실적</p>	<p>연간 정기갱신</p>		<p>연간 정기갱신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p>
<p>제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p> <p>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p>	<p>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p>	<p><u>한국채권평가</u> <u>서울 종로구 세종로211</u></p>	<p><u>한국자산평가</u> <u>서울 종로구 율곡로 88</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3분의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u>특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u> - <u>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u>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 <u>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4) 반대매수청구권</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u></p>	<p><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 1. <u>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u>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u>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u>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영업보고서] 3)<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p>	<p>[영업보고서] 3)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으로</u> 표시한 경우</p>	<p>(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표시한 경우</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2) 수시공시 1~7. (생략) <u>8~9. (추가)</u></p>	<p>(2) 수시공시 1~7. (생략) <u>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u> <u>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정기갱신		연간 정기갱신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9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7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연간 정기갱신		연간 정기갱신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비용			
제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연도별 운용실적	연간 정기갱신		연간 정기갱신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제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u>한국채권평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211</u>	<u>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u>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3분의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u> - <u>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u>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 <u>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4) 반대매수청구</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u></p>	<p><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권		<p><u>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1. <u>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2. <u>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영업보고서] 3) <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영업보고서] 3)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u>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으로</u> 표시한 경우	(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표시한 경우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2) 수시공시 1~7. (생략) <u>8~9. (추가)</u>	(2) 수시공시 1~7. (생략) <u>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수 있다는 사실</p> <p><u>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나. 수시공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p>- <u>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p> <p>-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p>	<p>(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p>-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p> <p>-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p>

- AB 유럽 인컴 증권 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정기갱신		연간 정기갱신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p>③ (생략)</p> <p>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9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③ (생략)</p> <p>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7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간 정기갱신		연간 정기갱신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제3 부. 집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 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연도별 운용실적	연간 정기갱신		연간 정기갱신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제4 부. 집합투자기 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 구 관련 회사에 관 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u>한국채권평가</u> <u>서울 종로구 세종로211</u>	<u>한국자산평가</u> <u>서울 종로구 율곡로 88</u>
제5 부. 기타 투자 자보호를 위해 필요 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 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 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 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권의3분의2이상과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3분의1 이 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 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4분의1 이 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 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된 수익증권 총좌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 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제5 부. 기타 투자 자보호를 위해 필요 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 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 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 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 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u>
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u> - <u>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u>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 <u>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제5 부. 기타 투자	자본시장법 등	<u>법 제188조제2항각호의 부</u>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4) 반대매수청구권</p>	<p>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u>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 1. <u>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2. <u>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영업보고서] 3)<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p>	<p>[영업보고서] 3)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u></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으로</u> 표시한 경우</p>	<p>(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표시한 경우</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u></p>	<p>(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u>및 그 사유</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u>및 그 사유</u>

□ 집합투자규약 주요 변경사항

- AB 글로벌 고수의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④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9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7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37조(수익자총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⑥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⑥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추가)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u>다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u>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⑨ <u>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u></p>	<p>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본다.</p>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① <u>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u>	① <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 1. <u>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제41조(환매수수료)	종류C-P 환매수수료 삭제	<p>① (생략) ② 1~3. (생략) 4. 종류 C-P 수익증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① (생략) ② 1~3. (생략) 4. 종류 C-P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p>
제44조(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변경)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p>③ (생략) 1~5. (생략) 6. (추가)</p>	<p>③ (생략) 1~5. (생략) 6.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p>⑤ (생략)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p>	<p>⑤ (생략)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u>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 단서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u>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u>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 - 재간접형)
- AB 유럽 인컴 증권 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④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9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u>100분의 70</u>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37조(수익자총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⑥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3분의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⑥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추가)</p>	<p>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u>다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u></p>
		<p>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⑨ <u>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u></p>	<p>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본다.</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p>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p>① <u>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1. <u>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2. <u>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p>③ (생략) 1~5. (생략) <u>6. (추가)</u></p>	<p>③ (생략) 1~5. (생략) <u>6.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u></p>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u>(추가)</u></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p>⑤ (생략)</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으로</u> 표시한 경우</p> <p>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u>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 단서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u></p>	<p><u>법 시행령 제22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⑤ (생략)</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표시한 경우</p> <p>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u>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 기 타: 기타 자세한 변경 내용은 변경된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